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15
----------	-------

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엄태영 · 이소희 · 이만희
김상훈 · 안철수 · 권영진
윤한홍 · 이종배 · 김용태
김재섭 · 서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됨.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6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6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⑤ (생 략)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u>2026년 12월 31일까지</u>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⑥ ----- -- <u>2029년 12월 31일</u> ----- -----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